

# 「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24일

나. 발 의 자: 장미경,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태, 김춘남,  
박교상, 박세채, 안주찬, 소진혁, 이명희, 이정희,  
장세구, 허민근 의원(14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4일

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장 미 경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,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 보호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함

## 다. 주요내용

### ○ 공작물(발전시설)에 대한 허가기준 개정 [별표 27]

- 축사, 작물 재배사 등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

## 라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8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6조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축사·작물 재배사 등의 건축물 위의 공작물(발전시설) 설치에 대한 허가기준[별표 27]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- 일정 요건을 갖춘 축사, 작물 재배사, 동물·식물과 관련된 시설 등의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의 설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,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(부칙 제2조) 구미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건축물 위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 종사자의 부가 수익 창출과 영농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별표 27 기호(■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) 제2호에서 “일조, 통풍,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” 라고 규정된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## 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한 집행 부서의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였으며, 조례의 제·개정 전 설명회 및 사전영향평가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·청취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.
- 축사 악취저감을 위한 시의원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TF팀 신설·운영을 통해 악취저감을 위한 총괄적 사업의 실시가 필요함.

##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